

변경대비표

[집합투자규약]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 년 9 월 23 일
3. 정정사유
 - 펀드명 변경(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명칭 변경(Class S-P → Class S-P1(연금저축))
 - 클래스 추가(Class S-P2(퇴직연금))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변경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 Class S-P 종류)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Allset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Class S-P - <신설> - (이하 생략)	①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Class S-P1(연금저축) - Class S-P2(퇴직연금):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u> - (이하 현행과 동일)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9. (생략) 10. Class S-P 수익증권 11.~14.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9. (현행과 동일) 10.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11.~14. (현행과 동일)

	15. <신설> ②~⑤ (생략)	15. Class S-P2(퇴직연금) ②~⑤ (현행과 동일)
제39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9. (생략) 10. Class S-P 수익증권 11.~14. (생략) 15. <신설>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9. (현행과 동일) 10.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11.~14. (현행과 동일) 15. Class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43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7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제40조(판매수수료)	①~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9. (생략) 10. Class S-P 수익증권 11.~14. (생략) 15. <신설> ④~⑥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9. (현행과 동일) 10. Class S-P1(연금저축) 수익증권 11.~14. (현행과 동일) 15. Class S-P2(퇴직연금): 해당사항 없음 ④~⑥ (현행과 동일)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 (생략) ④ <신설>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

		<p>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한다.</p> <p>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p> <p>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p>
--	--	---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 년 9 월 23 일
3. 정정사유
 - 펀드명 변경(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클래스 추가(Class S-P2(퇴직연금))
 - 클래스 명칭 변경(Class S-P → Class S-P1(연금저축))
 - 운용전문인력 변경(박주연 → 김우주)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추가)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변경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박주연(글로벌주식팀)	김우주(글로벌주식팀)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중략)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클래스 추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현행과 동일)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중략)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클래스 추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현행과 동일)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1(연금저축))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5. 운용전문인력 (1) 운용전문인력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주연(글로벌주식팀) (3)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신설>	5. 운용전문인력 (1) 운용전문인력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 김우주(글로벌주식팀) (3)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2020.09.23: 박주연→김우주

<p>제2부.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2) 종류형 구조</p>	<p><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클래스 추가></p>	<p><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 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 업자는 제외하 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제2부. 11. 매입, 환 매, 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2) 종류별 가입자격</p>	<p><클래스 추가></p>	<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 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 업자는 제외하 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클래스 추가></p>	<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 금)) - 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 해당사 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보수 : 0.843% - 판매회사보수 : 0.17% - 신탁업자보수 : 0.06%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7%</p>
<p>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p>	<p><신설></p>	<p>* 집합투자규약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 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 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 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 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 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 지)</p>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	-----------------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1. 집합투자기구 :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 년 9 월 23 일
3. 정정사유
 - 펀드명 변경(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 운용전문인력 변경(박주연 → 김우주)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변경	NH-Amundi Allset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NH-Amundi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박주연(글로벌주식팀)	김우주(글로벌주식팀)